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7,254,089	12,817,623
일반회계	406,922,954	12,207,689
특별회계	20,331,135	609,934
기타특별회계	20,331,135	609,93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02,261	15,06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1,297	639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8,735,472	262,064
지하수관리특별회계	669,605	20,088
주차장특별회계	10,402,500	312,07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 세입·세출 예산 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550,26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 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 의존재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→지 기금→기 시비→시
 특별교부세→특세 특별교부금→특금